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기준 2026년 4월



지방관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	시·군·구
*	*	*	*	*

※ 이 항목은 고용노동부(청, 지청)에서 기입합니다.

- 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에서 승인받은 지정통계(제 118002호)로서 등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 조사는 사업체의 고용변동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자 수, 입·이직자 수 등에 대해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체 현황

설립연월(    년    월)

사업체명칭					소재지		
경영형태	1. 일반사업체	2. 파견업체	3. 용역(도급)업체	4. 기타	주요생산품명목 / 영업종목	1.	
사업체형태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3. 지사(점)·공장 등	4. 기타		2.	

## 2. 종사자 수 및 빈 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

※ 외국인포함,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제외

구분	종사자 수		노동이동							빈 일자리	
	'26.3월 종사자 수	'26.4월 종사자 수	'26.4월 입직자 수				'26.4월 이직자 수			빈 일자리 수	
	'26.3월 마지막 영업일 시점에 일한 종사자 수	'26.4월 마지막 영업일 시점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	총계	채용	기타	총계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기타		
			'26.4월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들어온(입직한) 근로자 수 (신규채용, 전입, 복직 등)	채용한 근로자 수	- 전입: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간의 인사이동 등 (내부의 부서 이동은 제외) - 복직 등	'26.4월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나간(이직한) 근로자 수 (자발·비자발적 이직, 기타 등)	자발적 퇴직자 수 (정년퇴직자는 기타로 분류)	- 고용계약종료 (단기, 계절적 계약 모두 포함) -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 회사경영상 휴직 등	- 전출: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간의 인사이동 등 (내부의 부서 이동은 제외) - 정년퇴직 및 사망 - 병가·육아휴직 등		
전체	총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상용	총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임시·일용	총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기타	총계	명	명	비고							
	여자	명	명								

확인란	응답자				책임자 확인	조사 담당자	조사 관리자	방문(통화) 기록지	방문(통화) 내역				
	성명	근무부서	직책	(인)	*	*	1차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차		*	*	*		
3차											*	*	*

※ 조사표 작성요령은 조사표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자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종사자

- 마지막 영업일 시점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

### 상 용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포함

### 임시·일용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미만인 자

### 기 타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또는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그 외 종사자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 입·이직자

- 조사기준월(월력상) 초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입·이직한 근로자
  - ☞ 해외파견근로자 파견 및 복귀시 입·이직 기타로 처리

### 빈 일자리

- 조사기준월(월력상)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 ☞ '구인활동'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과정(신문·방송 광고, 구두 홍보, 지원 서류 접수, 면접 등 최종적으로 채용 확정 공지일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

- [주의]**
-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마지막 영업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는 당월 마지막 종사자에 포함하고 다음 달의 이직자로 처리

## I 예시1 (입직자 수)

⇒ **A회사의 B지점에서**

- ① 4월 2일에 2명을 채용 → 신규채용자: 2명
  - ② 4월 24일에 1명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 → 기타(복직자): 1명
  - ③ A회사의 C지점 2명이 4월 1일자로 발령 받음 → 기타(전입자): 2명
- ⇒ **입직자 수는 5명 = (①신규채용 2명) + (②+③기타 3명)**

## I 예시2 (이직자 수)

⇒ **A회사의 B지점에서**

- ① 4월 1일에 2명을 A회사의 C지점으로 발령 → 기타(전출자): 2명
  - ② 4월 20일에 5명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 → 비자발(계약종료자): 5명
  - ③ 4월 27일에 2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 → 자발(퇴직자): 2명
  - ④ 4월 27일에 1명이 정년퇴직한 경우 → 기타(정년퇴직자): 1명
- ⇒ **이직자 수는 10명**  
= (③자발적 이직 2명)+(②비자발적 이직 5명)+(①+④ 기타 3명)

## I 예시3 (빈 일자리)

⇒ **A회사의 B지점에서 10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4월 마지막 근무일 현재,**

- ① 구인활동(채용공고 등) 중이고, '26.5월 중 일이 시작되는 경우' → 빈 일자리는 10개
- ② 구인활동(채용공고 등) 중이고, '26.6월 중 일이 시작되는 경우' → 빈 일자리는 0개
- ③ 이미 채용이 확정된 경우 → 빈 일자리는 0개